

 <p>거창군 Geochang County</p> <p>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</p>	<h1 style="font-size: 4em; margin: 0;">공 보</h1> <p style="font-size: 1.5em; margin: 0;">제967호 2024. 6. 5.(수)</p>	
---	--	---

선 결	기관의 장

고 시

거창군 고시 제2024-72호 도로명주소 고시 2

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24-842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3

거창군 공고 제2024-846호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공고(거창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) 4

거창군 공고 제2024-862호 거창군관리계획(장기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
공고 6

회 람									
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거창군 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☎055-940-3043)
 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<http://www.geochang.go.kr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6. 5.

거창군수

○ 도로명주소 고시대상

- 건물번호 부여 :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길 48-3 등 7개소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 (변경·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외탐지구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5. 31.

거 창 군 수

1. 사업지구의 명칭 : 외탐지구
2. 사업시행자 : 거 창 군 수
3.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: 268필, 174,196.8m²
 - 가. 외탐지구 : 신원면 대현리 102-1번지 일원
4. 지적확정조서 : [붙임] 참조
5. 공람기간 : 2024. 5. 31. ~ 2024. 6. 14. / 14일간
6. 공람장소 : 거창군청 민원소통과
7. 공람 비치서류
 - 가.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
 - 나. 지상경계점등록부
 - 다.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
8. 문의처 :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(055-940-3322)

붙임 지적확정조서 1부. 끝.

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

거창군이 시행하는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년 04월 23일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상남도 도시정책과(지방토지수용위원회)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의 명칭 :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
2. 사업 시행자 : 거창군수 구인모
3. 사업장 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47번지 일원
4. 사업 내용 :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
5. 공고기간 : 2024. 6. 1. ~ 2024. 6. 16 까지
6. 수용재결기관 :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
7. 송달할 서류 : 재결서 정본
8. 공시송달 대상자 : 붙임1 참고

2024. 6. 1.

거창군수 구인모

붙임1

공시송달 대상(토지) - 소유자, 관계인

연 번	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표시						소 유 자		관 계 인		
	소재지 (거창군 남상면)	지번	토지 지목 / 물건 종류		면적(m ²) / 수량		성 명	주 소 (현주소)	성 명	주 소	권리의 종류
			공부	현 황	공부	편입					
1	대산리	산148	임야	임야	496	496	미등기1	-	장경순1	거창읍 장정리	임야대장 상 소유자
2	대산리	산149	임야	임야	298	298	미등기2	-	장경순2	거창읍 장정리	임야대장 상 소유자

거창군관리계획(장기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
거창군관리계획(장기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6월 5일

거 창 군 수

1. 거창군관리계획(장기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: 변경 없음
- 나.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(변경) : 변경 없음
- 다. 용도구획 결정(변경) : 변경 없음
- 라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(변경) : **변경**
 - 1) 도로 결정(변경) : 변경 없음
 - 1) 공공시설 결정(변경) : **변경**
 - 가)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폐 지	22	파출소	공공 청사	위천면 장기리 479-8 일원	254	감)254	-	거고126호 (16.12.15)	

나) 공공청사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3	파출소	◦파출소 폐지 - 위치 : 위천면 장기리 479-8 - 면적 : 254m ²	◦원학파출소의 이전 설치에 따라 구)부지에 행복나눔공작소를 조성하여 주민 복지 향 상을 도모하고자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을 폐지함

- 마. 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에 관한 결정(변경) : 변경 없음

2.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3.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거창군청 도시건축과
4. 의견제출 방법 :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서면 제출
5. 관계도서 : 게재 생략(열람장소 비치)
6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055-940-358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서(서식)

- 실시계획(안)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
-
- 성 명 :
- 연락처 :
- 기타 참고사항
-

거창군관리계획(장기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□ 거창군관리계획(장기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(변경없음)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지 구 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제한내용	면 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기 정	3	장기지구	주 거	위천면 장기리 426-1 일원	지구단위 계획에 의함	214,490	거고40호 (’96.10.2)	

2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

가)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(변경)(변경없음)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지 구 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제한내용	면 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기 정	2	장기 개발진흥지구	주 거	위천면 장기리 426-1 일원	지구단위 계획에 의함	214,490	거고40호 (’96.10.2)	

나) 용도구획 결정(변경)(변경없음)

구 분	면 적(㎡)			구 성 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214,490	-	214,490	100.0	
주 거 용 지	165,120	-	165,120	77.0	
상 업 용 지	9,770	-	9,770	4.6	
녹 지 용 지	39,600	-	39,600	18.4	

다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(변경)

(1) 도로 결정(변경)(변경없음)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형 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21	15	집 산 도 로	59	중2-66	중2-22	일반 도로	-	거고43호 (’08.9.25)	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형 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22	15	집 산 도 로	628	중2-21	중3-28	일반 도로	-	거고5호 (’86.2.11)	
기정	소로	1	53	10	국 지 도 로	342	중2-22	중2-22	일반 도로	-	거고5호 (’86.2.11)	
기정	소로	1	54	10	국 지 도 로	184	중2-22	소3-55	일반 도로	-	거고5호 (’86.2.11)	
기정	소로	3	55	6	국 지 도 로	440	소1-54	상천리 209	일반 도로	-	거고5호 (’86.2.11)	
기정	소로	3	248	6	국 지 도 로	338	중2-22	중2-66	일반 도로	-	거고5호 (’86.2.11)	
기정	소로	2	220	8	국 지 도 로	370	중2-22	소2-221	일반 도로	-	거고5호 (’86.2.11)	
기정	소로	2	221	8	국 지 도 로	183	소1-54	중3-42	일반 도로	-	거고5호 (’86.2.11)	
기정	소로	3	256	6	국 지 도 로	79	중2-22	위천장기 506-1	일반 도로	-	거고5호 (’86.2.11)	
기정	소로	2	224	8	국 지 도 로	58	위천장기 499-12	소1-53	일반 도로	-	거고5호 (’86.2.11)	
기정	소로	3	128	6	국 지 도 로	136	소1-54	소2-220	일반 도로	-	거고5호 (’86.2.11)	

(2) 공공시설 결정(변경)(**변경있음**)

구 분	도 면 표 시 번 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기 정	25	학 교	장기리 426-1 일원	15,266	-	15,266	주거용지
기 정	2	면 사무소	장기리 511-2 일원	1,200	-	1,200	주거용지
폐 지	3	파 출 소	장기리 479-8 일원	254	감)254	-	상업용지
기 정	4	보 건 소	장기리 509-2 일원	865	-	865	주거용지
기 정	5	우 체 국	장기리 486-3 일원	1,114	-	1,114	주거용지
기 정	6	농 협	장기리 510-3 일원	830	-	830	주거용지
기 정	7	소방파출소	장기리 509 일원	1,633	-	1,633	주거용지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3	파출소	○ 파출소 폐지 - 위치 : 위천면 장기리 479-8 - 면적 : 254㎡	○ 원학파출소의 이전 설치에 따라 구) 부지에 행복나눔공작소를 조성하여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을 폐지함

라) 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에 관한 결정(변경)(변경없음)

구분	지정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(층)	
				최고	최저
주거용지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법)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거창군 계획조례 별표3(제1종일반주거지역)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	60	150	4	-
상업용지	○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6호 및 거창군 계획조례 별표6(준주거지역)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	60	150	4	-
녹지용지	○ 거창군계획조례 별표16(자연녹지지역)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	40	100	4	-

거창군관리계획(시설 : 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조서

1. 공공·문화체육시설

가)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22	파출소	공공 청사	위천면 장기리 479-8 일원	254	감)254	-	거고126호 (’16.12.15)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3	파출소	○ 파출소 폐지 - 위치 : 위천면 장기리 479-8 - 면적 : 254㎡	○ 원학파출소의 이전 설치에 따라 구) 부지에 행복나눔공작소를 조성하여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을 폐지함